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 명 선

(여성 개발원 연구원)

〈차 례〉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제한점
3. 아내 학대의 정의

II.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인 심리적 접근 방법
2. 가족 체계적 접근 방법
3. 사회 구조적 접근 방법

III.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사회사업은 사회과학 및 기타의 지식으로부터 획득된 통찰과 숙련을 터득해서 이룩되는 전문분야”¹⁾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타 학문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은채 과거에 터득한 연구결과를 배경으로 방법론적 이론과 실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급진적인 사회사업가들은 사회사업이 기존 사회제도의 모순을 가리우고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상 그 동안의 사회사업은 기본적 본질적으로 근대社会의 질서와 자본주의 제도의 유지·계속을 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 기구로 이용될 수가 있다.²⁾

그러나 현대社会의 급속한 변화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다는 인식아래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서 해방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

다.

특히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식과 함께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아내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베티 프리단이 말했듯이 아내학대 행위는 새로운 행동양식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어온 현상이었으나 최근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은폐되거나 문화적으로 암암리에 수용내지는 조장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학대 행위는 그 희생자에게 신체적 상해는 물론 심한 굴욕감과 함께 정신병리적 증상까지 초래하기도 하며 그 자녀들에게 폭행 학습의 장이 되어 폭행의 악순환을 거듭하게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 하겠다.

1983년 이같은 아내학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최초로 개통된 「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이 전체의 42.2%에 이르고 있다.³⁾ 또한 손 덕수씨가 서울의 하월곡동, 삼양동 140 가구 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48.84%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구타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⁴⁾ 1983년의 한국 갤럽조사연구소는 61%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편 의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⁵⁾

그러나 아내학대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 제반 시설의 미비로 발생빈도나 상해정도를 정확히 측정한 조사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인이나 대책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내학대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내학대 행위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부부간의 문제로 고립시키는데 기여한 이론적 배경을 밝혀보며 둘째, 아내학대 행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게 하는 요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찾아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학대 행위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제한점

아내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 특히 우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 — 둘째, 폭력을 허용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매스컴에서의 폭력 사용 등도 아내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논문에서는 의미있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 가부장적 사회제도가 아내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험적 조사 연구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3. 아내 학대의 정의

아내학대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써 아직까지는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규범적·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완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정 내에서의 폭행, 특히 아내학대 행위는 규범적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을 뜻한다.⁹⁾

Dale A. Masi는 아내학대란 “두 사람 사이의 합의하에 일어나는 가학적-파학적인 (Sadomasochistic)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없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¹⁰⁾

P.D. Scott는 “배우자의 공격의 결과로써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그 정도와 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정도 : ①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②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

③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

· 범도 : ① 자주 폭행

② 상황에 따라 폭행

③ 폭행의 횟수가 점점 증가

④ 주기적으로 폭행

또는 Straus, Steinmetz, Gelles 등은 아내학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CRT 척도(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Scales)를 이용하여 아내학대 목록을 만들었다.¹¹⁾

이상의 정의들은 주로 결과적인 상해를 중시시 하였으나 이외는 달리 공격자의 의도에 중점을 두고 아내학대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즉 “남편이 아내를 해치고자 했다면 실제로 상해를 입혔든 안 입혔든 아내학대”라고 보는 입장이다.¹²⁾ 그러나 이것은 남편의 의도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좀더 까다로운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내학대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양하다. 또한 사회 속에서 일어났다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폭행도 부부사이에서 일어났을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정문제 (Family-dispute), 가족간의 갈등 (Domestic-conflict)으로 취급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¹¹⁾ 그러므로 아내학대를 정의하는 개념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도 부부간의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부당하며, 학대의 위협도 실제의 학대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신체적 학대를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원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내학대 행위는 옛날부터 내려온 유서깊은 전통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것이며¹²⁾ 심리적·종교적·사회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양한 국면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¹³⁾ 따라서 여러 차원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개인의 심리내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내 학대에 관한 기존 이론을 개인심리의 차원과 가족체계의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이에는 배경적 환경이 되고 있는 사회구조가 경시되었음을 지적한 후 아내학대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개인 심리적 접근 방법

아내학대 행위의 요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학대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같은 분석 방법은 아내학대 행위를 부분적 병리가 존재하는 일탈행위로 전제하고 가해자인 남편의 유형과 심리적 특질을 분석하는 관점과, 여성심리 자체에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학대받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있다.

먼저 Elbow는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의 유형을 지배자(Controller), 방어자(Defender), 승인추구자(Approval seeker), 혼합자(Incorporator)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또한 Waker에 의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¹⁵⁾ 즉, 병적인 질투심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나 적절히 해소할만한 기술(Skill)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 성(Sex)을 하나의 공격적인 행위로 사용한다. 좌절하기 쉽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력적·폭발적 기질이

있다. 아동기에 신체적·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으며 의미있는 타인의 학대를 본 경험이 있다. 정서적으로 부인과 아이들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 등이다.

Leroy Schultz에 의하면 아내학대자는 자신의 의존적 욕구를 어머니에게서 아내에게로 옮기는데 이러한 어린애같은 의존성은 더 이상 아내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즉 아내의 관심이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쏟아지거나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할 때와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⁹⁾

또한 Steinmetz와 Straus는, 폭력지향적인 남성들은 육체적 완력을 하나의 자질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질은 돈이나 지식이나 존경심과 같은 다른 자질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래서 실직하여 돈을 벌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남편들은 자신의 좌절감을 아내에게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Dal Martin은, 남편들은 자기 자신이 교육을 못 받았거나 돈을 못 번다는 사실보다 자기 아내가 자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에 더욱 큰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²¹⁾

또한 남편의 음주가 아내학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Scott는 “그들은 술이 깨어 있을 때도 부인을 구타한다”고 반박하였으며²²⁾ 학대받고 있는 아내들은 “그들은 거의 언제나 술에 취해 지낸다”고 했고²³⁾ Gelles와 같은 사회학자는 “그들은 폭행하기 위하여 취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음주는 아내학대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술의 탓으로 전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아내학대자들의 특질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계속된 연구나 심리 검사에 의하면 아내학대자 중에서 병적 심리자의 비율은 일반 대중들 사이의 병적 심리자의 비율과 별 차이가 없음이 증명되었다.²⁵⁾

그러면 이러한 성격구조상의 특질들이 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내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까지 되는 것일까? 왜 남성들은 자신의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목표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 보편적으로 아내란 지위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되는데,²⁶⁾ 여기에는 남성의 가정은 아직도 그의 성역이며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사회는 그 남성의 가정의 신성함과 통합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른 깊고 오래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에는 학대받고 있는 아내의 심리적 특질이나 성격구조상에 그 동기가 이미 내재

해 있다는 이론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여성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희생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받게끔 허용하거나 폭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아내가 심한 잔소리나 비여성적인 태도로 자극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가학적(Sadistic)인 충동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즉 아내학대 행위는 부인의 피학성(Masochism)을 만족시켜 주고 남편의 가학성(Sadism)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줌으로써 부부간의 정서적 평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학대 행위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부부간의 문제로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다른 하나의 견해는 남성의 공격성을 타고난 본능으로 볼 뿐 아니라 성욕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²⁵⁾ 이러한 입장에서 Anthong Storr는 가정의 안정과 부부간의 성적 행복은 남성의 지배력에 의존하며 남성의 지배성과 어느 정도의 잔인성은 감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보다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은 여성에게 있어서도 성애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더욱 흥분시켜 준다고 언명한다.²⁶⁾

이와 같은 견해들은 Freud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한 여성심리학의 영향이 크며 또한 현재까지도 전문적인 원조자의 진단과 개입이 이론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므로 Freud의 여성 심리에 관한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Freud가 여성심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전제로 하였던 것은 해부학적 본성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며, 여성에게 남근(Penis)이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해부학적 결함으로 본 것이다.

즉 여성은 남근이 없이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심리적 발달과정 전체가 제한되고 조건지워져 있으며 자율성이나 공격성을 가질 수 없고, 초자아의 발달에도 결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Freud는 여성 심리의 특질로서 수동성, 나르시시즘과 함께 피학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⁷⁾

Krafft Ebing에 따르면 피학성이란 성생활이나 성 대상에 대한 모든 수동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극단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는데 쾌락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²⁸⁾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생물적 바탕에 근거하여 여성의 난자가 청중에 의해 세포막이 파열되는 상처의 경험으로 인하여 여성은 균원적으로 피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²⁹⁾

Erick Erikson도 피학성은 완전한 여성적인 여성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성의 내적 공간을 자궁에 비유하여 자궁이 비어있을 때는 여성은 언제나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³⁰⁾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에게 남근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합리적인 인간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적 추구라면 남성에게는 자궁이 없기 때문에 내면적 혹은 정신적 깊이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거세된 혹은 박탈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게된다.

또한 Freud가 정상적 여성심리의 보편적 요소라고 보았던 '남근선망' 자체가 Honey, Zilbroog, G. Bose 등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임신·출산·젖을 먹이는 행위 등에 대한 남성의 선망이 강렬함이 증명되고 있다.³¹⁾ 이렇게 볼 때 남근선망이란 남근으로 상징되는 이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위치이자 남근 그 자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정상적인 남성은 본래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정상적인 여성은 부종적이고 피학적이라는 가정과 함께 여성은 관통당하는 고통 속에서 일종의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왜냐하면 관통의 경험이 고통스럽고 따라서 피학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며 여성들은 왜곡된 성적 갈등이 없이 자란 경우 대부분 아픔보다는 쾌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³²⁾

고통이라는 것에 일종의 성적 쾌감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곧바로 피학성을 의미할 수는 없다. 고통은 종종 극히 정상적인 의미에서 성적 흥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피학성을 운위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굴종의 증거로써 요구되어져야 하며 자아가 밖에 놓여 있어야 하고 그 소외된 자아가 남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상대에게 자신을 주는 것은 피학성이 아니라 자기 초월을 의미한다.³³⁾ 따라서 여성의 성적 쾌감 속에서의 고통은 남성의 경우와 극히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의 성적 수동성 역시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긴 하지만 남성의 정상적인 성적 능동성이 가학성이 아닌 이상 여성의 그것이 피학성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성의 본래적 피학성이란 개념은 여성에게 남성우위 문화가 씌워놓은 덫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성의 피학성 문제는 해부학적·생물학적 특성에 있는 선천적인 요인만을 연구시킬 수는 없으며 환경과의 만남에서 생기는 경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족 체계적 접근 방법

이상 학대에 관련된 개인들의 차원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미 살

여본 바와 같이 이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아내학대 행위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성원을 개인으로 보고 분석함으로써 가족역학을 경시하거나 잘못 묘사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아내학대를 다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체계이론은 사회를 한 부분이나 부분들의 집합으로보다는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 내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가족도 구성원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을 초월한 사회적 유기체로 보고, 아내학대 행위는 큰 사회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가족체계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특히 사건의 발생과정, 개인 간·사건간의 상호관계를 중시 한다.³⁴⁾ 또한 각 체계에는 독특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 있으며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만약 가족체계 내에서 기존의 행동 방식과 다른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은 어떤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반응은 체계의 목적 및 체계 유지의 속성 등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새로운 행동의 유발자에게 그 행동이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Feedback”이라고 하며 긍정적인 Feedback을 받은 행위는 강화되고 부정적인 Feedback을 받은 행위는 약화된다.³⁵⁾ 아내학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은 체계의 유지를 자신의 고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당한다하여도 계속 그 체계 내에 머물고자 하며 또한 남편들 역시 아내가 체계를 이탈하고자 할 때 더욱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iles-Sims, Jean은 이와 같은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아내학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6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³⁶⁾

① 가족체계의 확립

가족체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패턴이 마련되고 경계가 생기며 법칙이 발전된다. 부부관계가 시작될 때 각자는 이미 충분하여 결정된 특성과 행동양식, 즉 학습된 규범, 가치 갈등을 다루는 성향, 결혼과 남녀의 권리 관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체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Straus와 그 동료들은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있거나 부모간의 폭행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동이나 배우자를 학대하기 쉽다고 한다.

② 최초의 폭행 발생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단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는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다음의 사건 발생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Positive feedback을 보이면 다시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Negative feedback을 보일 경우엔 변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첫번 째 폭행에서 분노를 느끼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태도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폭행을 중지시키려고 한다.

③ 폭행의 안정

일단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고 더욱 심한 폭행 가능성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 폭행에 대해 여성이 양보하면 Positive feedback으로 강화되고 만약 여성이 불복하면 남성지배를 유지하려는 혹은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불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이므로 남성들은 더욱 더 폭행을 가해 그 여성에게 Negative feedback을 보내고 결국 그녀는 다시 불복하지 않게 됨으로써 남성은 폭력사용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Positive feedback을 받음으로써 점차로 학대행위가 안정되어 간다는 것이다.³⁷⁾ 이와 같이 일단 학대행위가 진전되면 체계_內의 교정적인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데 이때 아내는 외부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러한 개입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Negative feedback을 보냄으로써 외부의 원조가 가족체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④ 선택의 단계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자신이 맞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게 되어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거나 가족이 외의 사람들에게 폭행 당하는 것이 노출되었을 때 여성은 더 이상 학대행위를 참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고 아내는 체계유지와 체계이탈간에서 선택을 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된다.

⑤ 체계이탈

초기 단계에서는 체계유지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전 단계에서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행동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⑥ 해결 혹은 학대관계의 지속

일단 가족체계를 이탈하였던 여성들에게는 예전의 학대관계로 돌아가거나 다시는 본래

의 가족체계로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되 체계내의 상호작용 패턴을 재구성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가족체계적 접근방법은 가족의 상위체계로서 사회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받는 영향보다는 가족 자체의 규범이나 작용 법칙을 우선함으로써 가족을 완전히 자율적인 제도로써 이해하고 가족이 사회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을 경시하였다.

어떤 특정한 가족상황이 학대행위를 유발한다는 연구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따라서 본래부터 성차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아내학대가 더욱 빈번히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는데 현재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 및 경제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내학대중 매우 드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사·분석인 것이다.³⁹⁾

또한 가정내의 힘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의사결정권이 아내학대를 야기한다는 연구 역시 이제까지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에서는 남성이 모든 힘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균형잡힌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아내우위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남성다움이 위협받는다고 느껴 폭력적으로 되고 남편 우위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자신의 우월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아내학대 행위의 촛점을 상호작용의 과정 즉, 가족구성원간의 역학에 두기 때문에 정작 폭력을 사용한 남성에게는 그 책임을 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음주를 학대행위에 대한 하나의 변명으로 삼았듯이 아내의 Feedback 즉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역동을 광경삼아 계속 폭력을 일삼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사회구조적 접근 방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학대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가족과 가족내의 개인만을 분석의 단위로 삼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여성을 비하하는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한편 그것과 결합하여 여성과 아내학대 행위에 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여 Dobash and Dobash는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가 아내학대 행위를 야기하고 영속화시키는 여성 종속의 패턴을 지배한다고 보았으며⁴⁰⁾ E.H.Russel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무력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한 관계에 수반되는 성차별적 가치와 태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가 자연스럽게 결과된다”고 하였다. 또한 K.

Miflet 도 현대사회를 한 성집단이 다른 한 성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를 가진 사회로 규정짓고 그러한 지배관계는 부부관계 가족구조 속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전체 사회가 가부장제의 성격을 띠게되며 그와 같은 사회내에서의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법률을 통한 폭력의 제도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⁴¹⁾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반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가 아내학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회제도들을 편의상 가족제도, 경제구조, 법제도의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제도

가족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해온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⁴²⁾ 이 사회에서 여성의 어디에 귀속되어 있든지 그녀의 신념을 만들어내며, 억압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과,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이며⁴³⁾ 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심리적 동질성이 나 사회적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도 가족안에서이다.

보편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Eli Zaretsky에 의하면 가족은 구체적인 사회제도이며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통합되어 있고 그 생산양식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⁴⁴⁾

오늘날의 보편적인 가족제도는 형식적으로 일부일처제라 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란 '부'의 사유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속과 관리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므로 '부'의 소유자인 남성은 가정에서의 지배력을 강약하고 가정의 구성원을 자신의 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단위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⁴⁵⁾ 즉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는 경제단위로서의 친족공동체에서 탈피하여 남녀간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는데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계속적으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반면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은 교환가치의 잠재적 원천이 되었다.⁴⁶⁾ K. Sacks에 의하면 이러한 양성간의 노동분화는 재산의 측적과정에서 지배·종속의 권력관계로 귀결된다.⁴⁷⁾ 따라서 오늘날의 가족제도는 경제적·심리적으로 가부장적 특징을 갖는 제도라 볼 수 있다.

F. Engels에 의하면 'Family'라는 말 자체가 최초에는 부부와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고 한 사람의 남자에게 소속되는 노예들의 총체를 의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가장이 아내·자녀·노예를 지배하는 사회집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로마법하에서 가장은 이를 모두의 생사권을 가졌던 것이다.⁴⁸⁾ 따라서 여자는 결혼 자체에 대해서나 자기남편 또는 소유주의 가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으며, 만약 여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표시를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⁴⁹⁾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층 더 강력하게 수행한다. 즉,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족은 급증하는 노동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제를 담당하였으며 선진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족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위계적 사회질서를 내면화시키는 사회화의 역할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담당하고 있다.⁵⁰⁾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에서 최고의 효율과 최대의 이윤을 위하여 혹사당한 남성들이 그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가정 뿐이기 때문이다.⁵¹⁾

소가족 제도로 변화한 현대가족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녀양육 및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됨에 따라 이같은 사회적 필요성이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여성은 모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유지를 최대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도록 강요하며 결혼의 실패는 여성으로서의 실패의 표본이라고 사회화 시킨다.⁵²⁾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의 학대행위를 가정의 유지를 위해 참고 지내게 되며 학대행위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외부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거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행위 등을 더욱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가족제도 및 남·여성관은 전통적인 음양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역」에 의하면 남자는 하늘에 비유되고 '乾' (乾)이라는 개념으로 묘사되며, 여자는 땅에 비유되고 '坤' (坤)으로 풀이된다. 또한 역할면에서는 안과 밖으로, 정체성에 있어서는 공과 사로 엄격히 구분되었다.⁵³⁾ 이조 시대 여성의 생활 지침서였던 「內訓」에서는 이 역할상의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아내는 가운데 있으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합이라, 오직 술이며, 밥이며, 의복의 예를 일삼을 뿐이언정 나라의 정사에 참여함이 가히 불가능하며 집안의 일처리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가히 불가능하나 총명하여 재주와 지혜가 있어 옛일이나 이제일을 잘 알지라도 반드시 군자를 도와서 부족한 것을 전할 뿐이언정 반드시 암탉이 아침에 울면 화를 일으키게 한다."⁵⁴⁾

또한 「內訓」의 부부장 제 4에는 "남편을 아비같이 섬기나 혹 그릇된 일을 간하다가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노하기는 커녕 전혀 원망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가족도 많이 변화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즉 형태면에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가, 규모면에서는 소가족화가, 가족주기면에서는 가족형성기의 자연화가 이루어져 왔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족구조의 핵심적 부분은 쉽게 변화하지 않았다. 조은교수는 산업화를 통한 가족의 변화를 시인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남성의 전위나 우위성을 폐손하지 않은 면에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결혼과 가족제도의 본질은 아내학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Del Martin은 그의 저서 「Buttered Wives」에서 아내학대 행위는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부인에 대한 남편의 지배체제가 표출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내 구타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 규범의 반영이며 또한 그것은 결혼관계에서 남성의 지배를 지지하기 때문에 전통적 결혼이 가부장적 사회의 중심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2) 경제구조

여성이 자신을 독립한 한 개인으로 의식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강화해온 또 하나의 축면을 경제구조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사용가치의 생산과 교환 가치의 생산이 서로 분리된 체계를 갖도록 만드는데 여성이 가정에 남아서 가사를 돌보는 일은 오직 사용가치에 불과한 생산으로서, '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댓가는 사회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수입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이 같은 역할분담의 결과 여성은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장의 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물질적 및 비물질적 차원의 공급을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할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의 전반적인 가부장적 구조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즉 취업여성은 임금, 승진, 재교육기회, 정년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전면적인 차별을 M. Dixon은 "여성은 직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채용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가장 늦게 승진되고 맨 먼저 해고 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⁷⁾

1983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직업별로 살펴 볼 경우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종사자 4.1%, 사무직 종사자는 9.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림·어업(32.5%), 생산직(20.2%) 및 판매직(18.6%)에 몰려 있다.⁵⁸⁾

또한 이를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어 볼 경우, 미혼여성은 그 절대량이(70%) 도시의 제

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노동력의 절대량이 기혼여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남성들이 추진해온 산업화과정에서 미혼여성들은 제조업분야에서 저임금으로 공현만 하고 있을 뿐 발전의 결과에서는 소외되었으며, 기혼여성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조차 소외된 농업부문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며, 어떤 형태로도 그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 저임금을 고착화하려는 경제구조의 필요에 의해 남자만이 가계유지 책임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계보조적 노동으로 일할 뿐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대부분 가사연장적인 일, 남성의 기간업무에 대조되는 보조업무으로 배치되어 단순 미숙련직종에서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다.⁵⁹⁾

1983년 전산업에 있어서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여성의 임금은 46.6%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46.2%에 불과한 것이었다.⁶⁰⁾ 임금의 누적 구성비를 보면 10만원 미만이 40.4%, 14만원 미만이 78.2%, 20만원 미만은 거의 전체라 할 수 있는 94.2%에 달하여⁶¹⁾ 차별적 임금이라는 측면과 함께 생계비에 조차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여성의 신체적 나약성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여성의 억압을 합리화해 왔으나 여성의 육체적으로 나약하다고 해서 일 자체를 안해 온 적은 결코 없었다. 현재의 노동시간을 보더라도 남성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1.7시간임에 반해 여성은 53.7시간으로⁶²⁾ 남성의 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시간을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성취업자는 이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 및 차별적 고용관리로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 이는 80년대의 현대·대우·삼성 등 대기업의 기혼 여성 채용을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에서 기혼 여성을 채용하기로 하자 불리한 근무조건⁶³⁾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기혼 여성들이 몰려들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그들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직장에서 배제되어 대량의 실업자군으로 남아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특히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내가 폭력적 가정환경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들간의 경제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의 폭력, 즉 아내학대 행위로 발전하는 긴장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위치는 생산양식과의 관계 여부와 사회적 기득권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법제도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법은 그 사회구조의 집약적 표현인 것이다.⁶⁴⁾ 오늘날과 같은 자본제 사회의 법제도는 이윤증식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 경쟁을 기본틀로 삼고 사소유권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요소를 최대 가치로 인정한다. 그런데 신인령 교수에 의하면 자유란 강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억압의 자유, 지배의 자유로 화하고 약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굴종의 자유, 예속될 자유로 화하는 것이다.

또, 한편 법제도 자체의 속성은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은 법률의 명문 규정이나 애매하고 형식적인 법규정의 운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남성의 예속물로 남기를 요구당하게 된다. 한 예로 써 현재 여성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인 가족법은 남성지배 사회를 위해 남계 혈통을 대대로 이어 나가는 것을 규범화하고 남성과 여성, 가장과 가족으로 나누고 상하·지배·복종의 관계로 인간을 차별하는 비민주적 성격의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학대 행위가 지나쳐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법제도상으로는 부부도 협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으나(제 834조 이하) 이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뒷바침이 전혀 없고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남편의 선심이나 가부장적 사회의 판단에 근거한 극히 미미한 액수가 주어질 뿐이므로 실제로 여성에게 있어서 이혼의 자유란 이혼을 당할 자유에 불과한 것이다.⁶⁵⁾ 이것은 결혼기간 동안 여성이 담당해온 가사노동을 전혀 무시한 규정이며, 부부가 함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모은 재산일 경우에 조차도 그 재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이별을 차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父)와 모(母)가 친권을 공동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협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은 ‘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제 781호 이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제도는 사회구조의 집약적 표현이라는 자신의 본질에 의해 현재 사회의 지배와 예속, 강자와 약자의 존재를 전제한 경제조직과 그에 기초한 인간 관계를 틀로 하는 여성 억압적 구조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법을 다루는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일선 경찰이나 검사·판사의 태

도도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하여 외부의 개입을 요구하였을 경우 사회가 보이는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즉,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경찰'을 들 수 있으며, 학대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또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아내학대 행위로 인한 호출은 가정불화로 취급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데는 20분에서 수시간이 걸리며, 심지어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⁶⁶⁾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남편의 심한 학대행위를 고소한 한 여약사의 경우에 법원은 "부인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들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남편을 불구속 수사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부인에 대하여는 가정의 일은 사회로 들고 나왔다하여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도처에서의 비난이 퍼부어졌다.⁶⁷⁾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무조건적 인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의 내용보다는 형식상의 가정유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남편의 학대행위를 너그럽게 인정하는 의식구조와 법제도의 적용이 모든 남편과 아내들, 특히 잠재적 학대자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충언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에 관하여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⁶⁸⁾ 역시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댓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 보상으로 받는 것 보다 크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아내학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심각한 사회적 규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찌기 J.S. Mill도 "현 사회제도에 있어서 남편에게 부여하는 무한한 힘이 남성으로 하여금 이기성을 갖게하는 숨은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제도는 남편에게 잔인성을 유발시키고 혼행 혼인법하에서는 여성은 전통적인 노예상태를 견딜 수 밖에 없게 한다"고 보고 힘과 지배의 상징인 법과 제도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⁹⁾

II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아내학대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법을 살펴본 뒤 아내학대 행위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가족제도, 경제구조, 법제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아내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전화(Hot line)와 대피소(Shelter house)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전화를 개통하여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대피소도 마련할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현재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 남성이나 학대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제반 사회제도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심리치료 혹은 대피소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 전략과 동시에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의 전략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첫째,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고정된 성별 역할의 제거, 둘째, 남성과 여성간의 등등한 취업기회 및 균무조건, 특히 기혼여성의 재취업 확대, 셋째, 차별적 법조항의 개정 및 법판례자들의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사업가들은 법, 종교, 취업기회, 행정적 절차 등에 있어서의 남성 우월의식과 가정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및 성차별적 사회화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받은 아내가 그같은 폭력적 환경이나, 폭력적 남편을 떠나 자신을 돌아 볼 기회를 원하거나 자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아 줄 턱아사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간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배운 것을 성인이 된 후에도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있고 많은 학대 남편들은 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계속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부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는 각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상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여 앞으로 사회사업가들 사이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사회제도의 가부장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Scales)가 개발되어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아내학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

해 본다.

〈끝〉

*** 註 ***

- 1) 노창섭, 「사회사업개론」(서울: 새글사, 1967), p. 86.
- 2) 김미원, "사회사업의 가치와 사회사업가의 가치관의 분석적 고찰,"(이대 석사학위논문, 1981), p. 15.
- 3) 여성의 전화 「개원기념자료집」(1984), p. 3.
- 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대한 연구」(서울: 민중사, 1983).
- 5) 중앙일보, 1983. 7. 21.
- 6) Carmen Germaine Warner and G. Richard Braen (eds.), *Management of the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 Emergency Assessment, Intervention and Counseling* (Norwalk : Appleton-Century Crops, 1982), p. 31.
- 7) Dale A Masi, *Organizing for Women : Issues, Strategies and Services* (Lexington : Heath, 1981), p. 104.
- 8) P. D. Scott, "Battered Wives Br J Psychiatry,"(1974), p. 125, pp. 443-444, quoted in Elain Hilberman M. D., "Overview: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Psychiatry*, Vol. 137., (1980), p. 1338.
- 9) N : 빨로차고 물고 주먹으로 때림.
O : 물건을 가지고 때리려하거나 실제로 때림
P : 마구 후려침
Q : 종이나 칼로 위협함
R : 종이나 칼을 사용함
Murray A. Straus, "Wife-Beating : How Common and Why?", *Victimology*, Vol. 3-4, (1977~78), pp. 444-445.
- 10) Carmen Germaine Warner 外(eds.) (1982), p. 31.
- 11) Naomi Gottlieb (ed.) (1980), p. 183.
- 12) 펠 마틴, 「매맞는 아내」, 꽈선숙(역)(서울: 흥성사, 1984), p. 54.
- 13) R. Robert Albert, *Sheltering Battered Women*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1981), p. 133.

- 14) M. Elbow,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Violent Marriages," *Social Casework*, Vol. 58(1977), pp. 515—526.
- 15) Carmen Germaine, et al (eds.) (1982), p. 108.
- 16) 엘마틴, 前揭書, p. 82.
- 17) Suzanne K. Steinmetz and Murray A. Straus, "General Introduction : Social Myth and Social System in the Study of Intra-family Violence," *Violence in the Family*, p. 9.
- 18) 엘마틴, 前揭書, p. 93에서 재인용 *Ibid.*, p. 94.
- 19) P. D. Scott, *op. cit.*, p. 1339.
- 20) 엘마틴, 前揭書, pp. 94—96.
- 21) P. P. Scott, *op. cit.*, p. 1339.
- 22) J. Richard Gelles, et al. (eds.) (1983), p. 152.
- 23) *Ibid.*, pp. 157—161.
- 24) Naomi Gottlieb (ed.), p. 192.
- 25) 엘마틴, 前揭書, p. 109.
- 26) *Ibid.*, p. 110.
- 27) 카렌호너, 「여성심리학」, 이근후, 이동원(공역) (서울 : 이대출판부, 1982), p. 248.
-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학신론」 (서울 : 이대출판부, 1978), p. 199.
- 29) *Ibid.*, p. 200. 上揭書, p. 200.
- 30) *Ibid.*, p. 200. 上揭書, p. 200.
- 31) 카렌호너, 前揭書, pp. 58—77.
- 32)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前揭書, pp. 217—218.
- 33) S. 보바르, 「제 2의성」, 조홍식(역) (서울 : 올유문화사, 1973), p. 230.
- 34) Giles-Sims Jean, *op. cit.*, p. 18.
- 35) *Ibid.*, pp. 9—10.
- 36) *Ibid.*, pp. 120—140.
- 37) Haley는 이를 "runaway"라 함.
- 38) J. Richard Gelles, et al. (eds) (1983), pp. 29—30.
- 39) Giles-Sims Jean, *op. cit.*, p. 143.
- 40) *Ibid.*, p. 35.

- 41) 케이트 빌레트, 「성의 정치학」, 상권, 정의 속, 조정호(공역)(서울 : 현대사상사, 1976) 참조.
- 42) 엘리 자레스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역)(서울 : 한마당, 1976) p. 20.
- 43) 上揭書, p. 21.
- 44) 上揭書, p. 146.
- 45) 헬마틴, (1984), p. 53.
- 46) 강선미, “성별 불평등 구조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2), p. 37.
- 47) Karen Sacks, “Engels Revisited,” *Women, Culture and Society*, M. Rosaldo and L. Lamphere (ed.)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207 — 222, 上揭論文, p. 37에서 재인용.
- 48) 술라미스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역) (서울 : 풀빛, 1983), p. 83.
- 49) 헬마틴, 前揭書, p. 56.
- 50) 줄리엣 미첼, 前揭書, p. 165.
- 51) 지은희, “여성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접근” (이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7), p. 41.
- 52) Jennifer Baker Fleming, *Stoping Wife Abuse* (London : Anchor Books, 1979), p. 3.
- 53) 조혜정,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세아 여성연구」, 제 20집(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1981), pp. 81 — 111.
- 54) 上揭論文, pp. 84 — 85.
- 55) 함인희,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 : 1960. 70년대 산업화와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3) 참조.
- 56) 조은, “산업화와 신가부장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83)
- 57) 말린 덱스, “여성해방운동의 대두,” Roberta Salper (ed.), *Female Liberation*, 이효재(편)(1979), p. 103.
- 58) 김금수, “근로여성의 상황과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여성연구」, 제 2권 제 2호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84), p. 50.
- 59) 여성평우회, 「여성평우」, 제 2호(1984), p. 27.
- 60) 김금수, 前揭論文, p. 55.

- 61) 上揭論文, pp. 55 – 56.
- 62) 上揭論文, p. 56.
- 63) 대부분 대졸 기혼여성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1~2년의 임시직으로 규정함.
예를 들어서 매우는 1년 계약고용제를 채택했으며 현대는 초임을 26만원 선으로 정하고 있어 남성의 초봉 31만원보다 낮다. 「서울신문」, 1984. 11. 4.
- 64) 이대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학」(서울 : 이대출판부, 1979), p. 285.
- 65) 上揭書, p. 285.
- 66) 엘마린, 前揭書, p. 144.
- 67) 「한국일보」, 1983. 7. 16. “부부싸움·법정으로 가야하나, 가정으로 되돌려야,”
「조선일보」, 1983. 7. 28. “집안일은 집안에서 풀자”
「경향신문」, 1983. 7. 20. “집나오는 안방사건” 등
- 68) J. Richard Gelles, et al (eds.) (1983), pp. 151 – 165.
- 69) 이대 한국여성연구소(편), 前揭書, p. 11.